



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
 [시행 2024. 5. 22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87호, 2024. 5. 22., 일부개정.]

보건복지부(건강정책과), 044-202-2854

1. 공중위생교육대상자

- (1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
- (2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
- (3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(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)

2.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단체

교 육 대 상 자	위생교육 실시 단체
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자	(사)대한숙박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자	(사)한국목욕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용업 영업자	(사)한국이용사회중앙회
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일반미용업 영업자 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	(사)대한미용사회
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자 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	(사)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
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자 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	(사)대한네일미용사회
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화장·분장 미용업 영업자 ·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	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
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 영업자	(사)한국세탁업중앙회
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자	(사)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

3. 재검토기한: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4-87호, 2024. 5. 22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